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2024. 3. 14.(목)
제415회 임시회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3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- 지역 노사민정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사무국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8조)
-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14조)
-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의 추진 주체, 지원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(안 제16조 및 제17조)
-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띄어쓰기, 용어 등 조문 정비(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8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제출배경

- 제405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23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 당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규정인 「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」가 정비되어야 함을 지적함
- 이에 따라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이와 함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

나. 주요내용

- 노동자의 정의와 관련 근거규정을 수정 (안 제2조)

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호 →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

-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조문 정비(안 제8조)

(개정) 외부 사무국장 및 상근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

다. 종합의견

-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운영방식과 달리 외부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실제 사무국 운영 상황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함
- 다만, 조례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법규정비를 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